

第 1 會議 討論要旨

張在植(稅務士) : 徐教授님께서 개회사에서 종래의 傳統的인 一般的 法律專門家로서의 辯護士는 대부분이 非專門家로서의, 一般的 法律專門家로서의 限界를 인식하고 專門分野로 分業化된 現代社會에 적합한 體質改善과 反省을 해야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徐教授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은 것은 法學教育의 制度와 方法을 再檢討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法院의 現在 訴訟制度의 再檢討는 말씀 안하셨습니까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現在 租稅訴訟은 高等法院의 特別部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法科大學學生들이 지금 稅法공부를 해보아야 그들이 稅法知識을 活用할 수 있게 되는 時期는, 물론 辯護士로 막 開業하면 몰라도, 判事·檢事를 거쳐 辯護士를 開業하는 경우에는 약 10年後 즉 特別部에 가게 될 때가 되겠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稅法공부를 하는 것을 期待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申教授님께서 말씀하신 下級法院으로서의 租稅法院의 設置問題도 이것과 관련하여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방금 申教授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司法試驗의 科目을 볼 것 같으면 選擇科目으로라도 租稅科目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法科大學에 가서 講義를 해 보면 학생들 租稅法의 必要性을 느껴 講義를 열심히 듣고는 싶지만 司法試驗科目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現在 各 法科大學의 커리큘럼상 租稅法分野가 제대로 整備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커리큘럼 作成者가 租稅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一部 經驗者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租稅는 아시다시피 關聯學問이 매우 많습니다. 租稅에 대한 어떤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法律은 물론이지만 會計學, 財政學, 經濟學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企業의 實態라든가 去來의 慣行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美國의 모든 law school에서는 租稅法과 會計學이 必須科目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現在 우리나라에는 法科大學 뿐만 아니라 經營大學에도 租稅에 대한, 또는 稅法에 대한 커리큘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現在 租稅法에 대해서 造詣가 깊거나 實力이 있는 분들은 모두가 獨學하신 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租稅의 歷史 등이 日淺하기 때문에 그런 高충도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現在 稅務士의 水準으로서는, 물론 그중에서도 특별히 訴訟法도 공부했고 法院에 가서 訴訟代理를 할 만한 資格도 있다고 인정되는 분도 있겠습니까마는, 一般的으로 訴訟能力이 좀 부족하므로 그런 현재 實力으로 우리도 訴訟을 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약간 問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辯護士들 중에서도 租稅에 대해서 會計의 貸邊·借邊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두 우리는 訴訟節次도 알고 法律도 아니까 모든 租稅訴訟을 우리가 擔當하여야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問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무작정 相對方을 배격하고 자기의 領域을 넓히려려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보다 合理的으로 서로 자기 職能의 特性을 살려서 協力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방금 申教授님의 말씀에 의하면 西獨에는 訴訟을 代理할 수 있는 稅務士와 訴訟을 代理할 수 없고 記帳을 한다든지 稅務指導를 하는 稅務代理人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特許關係의 辨理士만 審判에 대한 不服의 上告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약간 問題가 있습니다. 特許關係만 辨理士가 訴訟代理를 맡게 하고 稅務關係는 稅務士가 訴訟代理를 맡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立法의 統一性이 보통 缺如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資格에 대하여 너무 경직된 思考를 갖지 말고, 가령 辯護士도 稅務의 內容, 방금 말씀드린 會計分野, 企業의 去來實態라든지 財政問題에 관한 知識 등을 充分히 갖춘 사람이 訴訟을 代理할 수 있으며, 또 稅務士도 訴訟節次나 法律의 基礎知識 등을 充分히 갖춘 사람이 訴訟을 代理할 수 있는 그러한 前提下에서, 조금전에 申教授님도 말씀하셨음니다만, 租稅에 관한 統一的인 節次法의 確立과 獨立된 租稅法院의 設置 등이 本格的으로 檢討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公認會計士와 稅務士와의 關係는 現在 서로 이야기 해 봐야 별 實益없는 討議만 계속될 뿐입니다. 위에서 말한 根本問題가 解決되어 서로 어떤 分野의 專門職種이 자기의 입장을 주장할 만한 資格을 갖추도록 하는 問題解決方案이 提示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全經九(辯護士): 主題에 대하여 말씀하신 申教授님께서 정확하게 現實을 認識하시고 問題點을 提示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게 된 것은 급격한 社會變動에 대하여 legal profession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對應해 나갈 것이냐 하는 問題때문이라고 저는 認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선 넓은 意味의 legal profession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社會環境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즉 우리들이 어떠한 環境的 challenge에 봉착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좀더 진지하게 관심을 表明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하여 社會變動이 우리 法曹職能에게 3가지로 challenge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광범위한 國際化的 물결에 대하여 legal profession이 어떻게 對應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職種自體가 專門職業이고 넓은 意味의 知識産業인 바, 社會가 發展해 나갈수록 legal profession이 다루는 問題들이 外換·貿易·證券·保險·科學技術 등으로 細分되어 감으로써 高度의 專門化를 要請하고 있으며 이에 對하여 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복잡한 問題들의 解決能力을 어떻게 길러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째는 아주 古典的이고도 새로운

問題로서 行政權의 肥大化와 이른바 行政國家의 등장인바, 날로 肥大해 가는 行政權에 隨伴되는 財政需要의 擴大, 또 이를 finance하기 위한 租稅行政體制의 強化 등에 대응하여 legal profession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response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社會變動에 따르는 여러 challenge에 대하여 問題點을 認識하고 이에 對應하는 專門職業人으로서의 마음의 자세 내지는 基本姿勢의 定立에 관한 根本的인 檢討가 絶실히 要請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오늘 이 세미나의 第1會議의 主題인 辯護士와 稅務士의 問題를 본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자신의 오랜 經驗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對立的인 關係라기 보다는 協力과 補完關係라고 하는 점에 깊은 認識을 가지고 있습니다. 稅務士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역시 稅務計算이나 基本通則에 매우 밝으시고, 辯護士들은 稅務計算이나 基本通則에는 도저히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는 반면에 法體系 全般에 대한 광범위한 知識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國稅基本法에 약간 강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辯護士와 稅務士들이 잘 協力하고 補完해 간다면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社會變動에 대하여 專門職業人으로서의 legal profession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 때 한가지 意見을 提示하고 싶은 것은, 數年間 傳統的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大韓辯護士協會와 醫學協會間의 年例세미나 처럼, 韓國稅務士會와 大韓辯協間에 共同세미나를 매년 開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稅務士와 辯護士의 關係는 醫師와 辯護士의 關係보다도 훨씬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 이것을 못했느냐 하는 생각을 申教授님의 훌륭한 發表를 듣는 도중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大韓辯協에 建議하여 금년부터라도 이것을 서둘러서 실시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意見을 보낸다면, 稅務士, 辯護士, 公認會計士 등의 關係를 하나의 專門職業人으로서 그들의 同業上의 權益擁護와 職域의 不침범 내지는 확대라는 점에서 본다면 매우 對立되어 있지만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職種을 살펴 볼 때에 모두가 國民의 權利를 保護·保障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완전히 共通되어 있으므로, 방금 이야기한 大韓辯協과 稅務士會와의 共同主催세미나에 그칠 것이 아니고 公認會計士團體, 辦理士團體등과도 모두 聯合을 하여 작게는 자기 顧客에게 대하여 充實하고 誠意있게 相談에 응하고 크게는 國民의 權利의 保護·伸張을 도모하도록 共同關心事에 대해서 研究하고 相互 意見交換을 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와같은 團體들이 모두 합쳐서 그들이 實務에서 얻은 많은 經驗을 立法에 충분히 반영하여, 事後의 問題를 辯護士·稅務士·公認會計士들이 解決하는 것 보다는 미연에 制度自體를 合理的이고 實情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